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과제

디에고 그라디스

스위스 미래를 위한 전통연구소\* 소장

우선 서울에 방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ICH) 보호 관련 NGO의 역할과 논의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초청해 주신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국에 있는 게 아주 편안하게 느껴진다. 사실 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25년 넘게 일해 왔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 차원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많았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함은 정부 대표, 전문가, 학계 인사, NGO 모두를 의미한다. 지난 해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43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유네스코 지역 회의에 참석했다. 아태지역의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고 이 지역 문화유산의 유형과 무형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지켜보며 매우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속해 있는 유럽 세계는 너무 자주 유산과 전통을 무시하고 근대로 넘어왔다. 이는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구조를 엮어 낸 가치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_ [www.tradi.info](http://www.tradi.info)

스위스 제네바 인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간 국제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전통 *Traditions for Tomorrow*'의 대표로서 나의 활동 분야는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이다. 1985년 이래 '미래를 위한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토착민들과 일부 소수 집단들, 특히 아프리카계 후손들과 함께 무형유산 보호활동을 해왔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음악, 춤, 구전 전통, 언어, 신앙, 전통적인 통치수단과 분쟁 해결체계, 전체론적인 의료체계, 문화간 이해 교육, 언론 등에 관한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개발된 수많은 현장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우리 NGO는 이러한 메커니즘과 전략의 모범사례를 수립해 왔고, 현재 역량강화를 위해 이를 다른 NGO들이나 민중 집단들과 공유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전통'은 12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사업 이외에도 1992년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1992년은 '미래를 위한 전통'이 NGO로서 유네스코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했던 해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World Decade for Culture and Development*, 두 차례에 걸친 토착민을 위한 10개년 계획 *International Decades for Indigenous People*, 그리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초안 작성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에 NGO 참가자로 참가할 수 있었다. 정부간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전통'을 차기 총회에서 인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NGO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05년 협약 절차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NGO-유네스코 중재위원회 *NGO-UNESCO Liaison Committee*의 9개 NGO 회원 중 하나인 우리는 2005년부터 유네스코 사무국과 회원국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전통'은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자문 자격으로 토착민들의 인권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 전통 지식, 문화적 표현, 유전학적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정의를 내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오늘 오전에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비정부간 공동체의 역할 증대
2. 지역적(국가적이란 의미에서)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제

3. 국제적 차원의 보호 과제 -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문제를 간략하게 다룰 것임.

## 1.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NGO의 역할 증대

내가 이 연구에서 NGO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지도 모른다. 아마 이 문제는 문명 *civilizations*의 불가사의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문명 *civilizations*이란 끝에 's'가 포함된 단어인데 그 이유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NGO의 역사를 보면 NGO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NGO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와 '세계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의 일부가 되었고, 특히 유엔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2004년 카르도조 보고서 *2004 Cardozo Report* 이후 더욱 그렇게 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대응 혹은 대안으로서 부상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오늘날 NGO는 정부, 의회, 민간 부문, 학계, 교회, 기타 종교 집단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공동체의 운영 기관들의 상대역이 되었다. 그 유명한 공공-민영 협력관계 *PPP*에 대해 논할 때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상 언급되곤 한다.

어제 세실 듀벨 과장은 비정부기구가 정부와 공동체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부간위원회 회의 폐회식에서 마쓰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때의 마쓰우라 사무총장의 연설을 인용해보면, "시민사회, 특히 NGO의 중추적인 역할…… NGO는 지역 공동체와 정부 간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주요 행위자"라고 언급하였다.

왜 '중추적 *pivotal*'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NGO 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주요 참가자들을 간략하게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유산 보유자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2003년 무형유산협약에서 '공동체, 집단, 그리고 때로는 개인'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무형유산 보호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다. 다음으로, 무형유산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국을 들 수 있는데, 무형유산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연구기

관을 들 수 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이 아부다비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부분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연행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NGO 없이는 국가가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아무리 유용하고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NGO가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하고 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만큼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9월 아마존의 코판 토착민 공동체(Cofan Indigenous community)를 방문했다. 우리는 석유 및 정유 추출 회사가 이 공동체의 영토를 무작위로 파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통지식과 샤머니즘 관행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으로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학교교육, 소비지상주의, 이민, 인근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NGO는 코판인들의 유산 보호 문제 뿐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도자로서의 샤먼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시행에 대해 현재 코판 당국과 논의 중이다. NGO들은 적어도 지난 15년간 영토를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토착민들의 분투를 후원해 왔기 때문에 토착민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NGO들은 앞서 언급한 샤먼 문제 등과 같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대표, 전문가 및 학계는 NGO와 토착민들이 해마다 구축하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쉽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작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의 매우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파나마의 쿠나 인디안(Kuna Indian) 젊은이 한 명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쿠나인들은 파나마 캐러비안 연안의 군도에 살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전통’은 구전 전통을 연구하는 데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을 후원해 주고 있었다. 이 젊은이들 중 한 명은 섬에 사는 아주 박식한 노인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한 시간 반 정도 카누를 타고 노인이 살고 있는 섬에 찾아갔다. 노인은 별로 몸이 좋지 않았고 이 젊은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한 달 후 두 번째 이 노인을 찾아 갔을 때, 노인은 어망을 고치느라 매우 바쁘다는 핑계로 인터뷰를 거절했고 젊은이는 카누를 저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몇 주 후, 젊은이는

세 번째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현명한 노인은 해변에서 젊은이를 맞아주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서 오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걸 말해주마. 왜냐고? 이제 난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배우고 싶다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물론 이 일화에서 NGO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GO는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NGO는 무형문화유산에서 나오는 이익 때문에 보유자들과 협력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 관심과 연대 의식이 이들의 원동력이며 유산 보유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대표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함께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따른 일부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정부간위원회의 운영지침 초안을 준비하는 전문가 회의 같은 곳에서 종종 표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민간전승시킴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고,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을 홍보나 관광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과잉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현장에서 종종 직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광 개발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보물섬 *el Dorado* 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공동체가 믿게 되면, 공동체는 이를 거부하기가 힘들어지며, 이로 인해 야기될 부정적인 결과는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토착민들의 분별력을 제고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착민들과 NGO가 가지게 되는 신뢰 관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첫 부분을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협약<sup>2005 Convention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sup>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며 종결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상당히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협약 제11조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시민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추해 봤을 때 그리고 두 협약 모두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에 의해 엄

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2005년 협약에서 그렇듯 2003년 협약에서도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제 우선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NGO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 II. 지역적 과제

본 회의가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NGO의 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필자 생각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산 보호 과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필자는 여기서 국가적 차원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03년 협약에는 본 협약을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 영역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협약 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협약을 조인한 당사국들에게 지워진다면, 협약 시행에 있어 주요 역할은 공동체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유산은 유산의 보유자인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대표목록이나 긴급보호목록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협약 초안자들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NGO의 개입이 왜 근본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NGO의 세 가지 과제—목록화 작업에 참여, 교육·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공동체 협력 중 앞의 두 가지는 협약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 과제는 다소 독립적인 것이다.

### 1. 목록화 작업

‘미래를 위한 전통’은 국가적 차원에서 2003년 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위스에서 연방 문화부 *Federal Department of Culture*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와 힘을 합쳐 NGO들을 결집하여 향후의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목록화 사업에 대해 정의 내리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음악, 풍속, 수공예, 전통 예술품, 국제협력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NGO들이 소집되었다.

그 이유는 행정당국이 이러한 NGO없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접근할 경우, 연행자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국가 목록화 작업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어조나 취지를 살려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직무로서 연행자의 유산을 목록화하는 접근법은 공동체가 트리클업(trickle-up) 의식화절차에 기반을 두어 이를 시도할 때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NGO와 연행자간에 명확한 구분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연행자는 종종 연행자 개개인이나 지역 집단으로 구성된 NGO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종종 정부당국과 직접적인 대담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자나 공동체가 아닌 NGO들 역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유산을 등록하도록 동인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시킴으로써 말이다. 목록에 기록함으로써 유산을 인정받는 것은 유산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앞서 언급한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두 가지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유산 보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초반에 언급한 적이 있다. NGO는 이와 유사하게 국가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 및 지방의 유산 목록에 등록할 때에도 보유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유자들의 주권과 통제권을 보호해준다. 보안상의 문제를 놓고 보면 공동체가 일부 전통 표현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NGO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취약점 중 하나는 이것이 독자적인 것이고 *sui generis* 항상 자연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표현되어지는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이를 목록화 작업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NGO의 경우 이들 보유자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에게 유산을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쉽게 인지시켜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록화 작업 절차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NGO들이 공동체, 특히 민중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는 신청 절차나 등록 요건 등을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

## 2. 교육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도록 강력하게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14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에는 비공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비정규 교육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들테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중등 학교 차원의 정규 교육이 필요한 것 못지 않게, 비정규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경우 NGO는 박물관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회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작업과 사전교육 작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에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지방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세계유산 지역 *World Heritage sites*을 수공예품이나 구전 전통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표현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차제에 지역의 NGO가 담당해야 할 것이 분명해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연행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표현을 존중하도록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제14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역량 강화라 함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에 관한 역량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역량도 의미한다. NGO는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이 스스로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활발한 역할을 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관광 개발로 인한 소득 생산 활동에 의해 무형 유산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미래를 위한 전통'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물질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때로는 거부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통적 표현



을 ‘매매’하거나 상업적인 이유로 개발하는 것이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멕시코의 모렐로스 주 *State of Morelos*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NGO인 ‘Coordinara de grupos culturales indígenas y populares de Morelos’는 전통적 표현을 통해 관광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표현의 의미와 목적을 변질시키는 위협에 대해서 지역 집단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 중 많은 부분은 자연이나 농사 주기와 연관된 종교의식이나 축하행사 때 행해지는 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유산들을 관광으로 유치하고 싶은 유혹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지역이 멕시코시티 근경 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인식을 제고한다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기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이 변형되어 조만간 원래 의미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NGO는 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다른 어떤 집단보다 훨씬 적합한 주체라고 여겨진다.

### 3. 공동체 협력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문화의 역동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NGO는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을 동원하는 데 적합한 매개기관이 된다. 페루 남부의 푸노 *Puno* 인근 지역에서 우리와 몇 년 동안 작업을 함께 해 온 한 NGO인 ‘Asociacion Chuyma Aru de apoyo rural’은 티티카카 호수의 페루 유역에서 50개가 넘는 아이마라 *Aymara* 인디언 공동체에 역동성을 가져다줬다.

이들의 주요관심은 안데스력에 따른 농경축제의 음악과 춤에 쏠려 있었다. 공동체간 교류가 형성되었고 특히 젊은이와 전통적인 권위자들에게 집중되었다. 농경 활동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자연의 신비와 징조는 이러한 행사 때 드러났고 공표되었고 쌍방향으로 유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이 NGO 역시 마을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고 농부들이 이 공동체의 활동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부 및 비주류 집단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역동성을 성공적으로 불어넣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주

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역동성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사회에서는 연행자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자신만이 간직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보유한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각에서 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전통 의학을 다룰 때 발생하는 것처럼 지적 재산권 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출처를 인용하거나 정보 제공자에게 조사 결과 제출을 소홀히 하는 학계의 남용 때문일 수도 있다.

### III. 국제적 과제

#### 1.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이행 관련 과제

무형문화유산협약 제9조 1항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NGO는 정부간위원회의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 중 협약의 자문기구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NGO는 앞서 기술했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완전한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운영지침을 따르는 NGO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긴급보호목록 등재 관련 협약 당사국에 의한 요청 심사
- 무형문화유산협약 제18조 하의 우수사례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사업 및 활동 심사
- 미화 25,000달러 이상의 국제기금 국제 원조 요청 심사
-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계획의 결과 평가

우리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총회에서 인가되어야 한다고 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선정한 NGO들이 내년 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차기 총회에서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2008년에 열렸던 협약 정부간위원회와 제2차 협약당사

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일부를 상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서 NGO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ICOMOS, IUCN, ICROM은 세계유산협약의 본문에 3개의 사례로 언급된 NGO이다.

세계유산목록 *World list*에 유적지를 포함하자는 협약 당사국의 요청을 3개의 NGO들이 심사한 결과는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NGO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회원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초안을 작성할 때,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된 후,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행해졌던 논의들은 이러한 경향을 입증해 주었다. NGO의 회의 참여 여부는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예상치 못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자문 기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는 전문가, 연구센터, 전문가 센터의 역할을 중시하고, NGO의 역할은 약화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에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서는 NGO에게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NGO의 자문 기능을 인정하는 협약 제9조 1항을 보다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말이다. 결국, 지난 달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의 자문 기구가 처음으로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유산 및 미화 25,000 달러 이상의 사업 기금에 대해 심사했을 때에도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여전히 협약 이행을 위한 NGO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얼마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아직 협약 이행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총회에서 강조했던 NGO의 역할 증대가 이루어질지 혹은 자문 역할이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전문가에게만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민주적인' 특성이 협약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2.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수단

이 회의의 주제로 돌아가서 정보 전달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NGO의 역할이 우선 과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NGO들

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법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이러한 대규모 작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작업에 정보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호라고 함은 등록, 보급, 기록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 한 편에 있는 여행자와 다른 한 편에 있는 여행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협약 제16조의 대표목록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세계 목록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무술의 예만 봐도,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World Martial Arts Union* 같은 NGO는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공 부문의 지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보다 이러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도 좋은 사례이고, 이미 언급했듯이 세계전통음악학회 *ICTM*, 세계민속축전기구 *CIOFF* 등도 그렇다. 지역 NGO나 때로는 국가 NGO는 무형문화유산과 경험을 등재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분야별 네트워크(춤, 음악, 언어, 구전 전통, 종교의식, 풍습 등)는 지구촌 곳곳의 집단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의 산물과 모두에게 이로운 지역적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NGO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준비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NGO가 처해 있는 취약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한편으로 NGO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긴다. 이 독립성으로부터 이들은 정당성과 특수성을 찾는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NGO의 재원은 항상 부족하며, 특히 예산 삭감 및 경제 위기의 시기에 더욱 그렇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이해관계자들이 오늘날의 살아있는 유산이 처해 있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진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NGO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 및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대적이고 시급하게 중요하다.